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87
----------	------

발의연월일: 2026. 8. 18.

발 의 자: 정능호 의원

찬 성 자: 강정수, 설재영, 김동성, 양유환
정홍근, 최혜연, 최미자, 박순호,
오세길, 박용준, 최병순, 김태민,
이원배, 정인화, 송용석, 신진미
(16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서구 조직개편(2026. 10. 1. 시행 예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정(안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 신설: 정책기획실, 문화교육국, 생활민원국
- 명칭 변경: 홍보담당관 → 소통담당관
- 삭제: 기획재정국, 평생학습원

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정(안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 명칭 변경: 경제환경국 → 민생경제국, 주민복지국 → 돌봄복지국

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정(안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신설: 환경녹지국
- 명칭 변경: 도시정책국 → 도시관리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8. 19. ~ 8. 25.(7일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평생 학습원”을 “정책기획실,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생활민원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을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을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 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 다. 1. (생 략) 2. 행정자치위원회 가. <u>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u> <u>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u>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 략) 3. 경제복지위원회 가. <u>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u>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 항 4. 도시건설위원회 가. <u>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생 략)	제25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u>정책기획실, 소통담당관,</u> <u>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u> <u>생활민원국</u> ----- ---- 나. (현행과 같음) 3. ----- 가. <u>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u> - ----- - 4. ----- 가. <u>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u> <u>환경녹지국</u>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